인천광역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

제출연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지역개발채권은 「지방공기업법」 및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자동차 등록, 각종 허가, 계약체결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公債)로서, 조례 제9조 제2항에서는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기준을 조례 별표 1의 기준 이하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우리시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전액 면제하고 있는 바,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에도 이를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신규등록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2021년말까지 연장 실시
- 2021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안) 첨부

나. 시행일 : 2021년 1월 1일부터(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

◈ 서민·물류업계 부담 완화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자동차 신규등록에 한하여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조치를 2021년에도 연장 시행코자 함

□ 현 황

○ 관련법령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 당초 매입기준(동조례 별표1에 규정)

■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비영업용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차) (차량가액의 1.5%～5%)
■ 각종 허가(점사용료의 5% 또는 면적당 정액), 계약 체결(대금청구액의 2%)

- **매입기준 변경 시행중**(동조례 제9조 제2항에 근거 → 별도 고시)

■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의 매입 면제**
☞ 2,000cc 이상 일반형(비 다목적형) 승용차는 매입(5%)
※ 자동차 이전등록, 허가, 계약체결은 당초 기준대로 매입 유지
■ 시행근거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420호(2019. 12. 24.)
■ 시행기간 : 2020. 1. 1. ~ 12. 31.(1년)

□ 필 요 성

○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종료시 기존의 리스차량 등록 수요가 타 시도로 이탈 전망 → 2021년도 우리시 세수 감소 불가피

※ 현재 매입면제 실시 중인 타 시도는 2021년에도 자동차 신규등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를 연장 예정(부산, 대구 등)

○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를 통한 리스·렌트 세수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리스	렌트	비율(%)		비고
				리스	렌트	
2018년	3,151	2,338	813	74.2	25.8	
2019년	3,347	2,454	893	73.3	26.7	
2020년 9월	2,985	2,174	811	72.8	27.2	

○ 서민층·물류업계 차량구매 비용 절감으로 시민혜택 지원

- 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2,000cc미만 승용차, 물류업 종사자가 구매하는 승합·화물·특수 차량을 대상으로 채권면제 유지
  → 차량등록 비용 절감으로 시민혜택 지속 제공

□ 2021년 추진계획

○ **자동차 신규등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연장 시행**

-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2021. 1. 1.일부터 12. 31일까지 면제
- 이외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의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각종 허가, 계약체결은 매입 유지

○ **리스·렌트 차량 유치로 세수확보**

○ **지역개발기금 자금운용**

- 2016년부터 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시행함에 따라 가용재원은 감소
- 이에 따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채권매출 외 융자회수 등 수입으로 채권상환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

□ 추진일정

○ **행정예고** : 2020. 12. 14. ~ 12. 18.

○ **고 시** : 2020. 12. 28.

○ **시 행** : 2021. 1. 1. ~ 12. 31

별 첨 | **2021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안)**

매 입 대 상	2020년도 매입기준	2021년도(안)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500cc이상	**매입 면제**	**좌 동**
② 2,000cc이상	- 일반형 : 취득세 과표의 5/100 매입	**좌 동**
	- 다목적형 : 매입 면제	**좌 동**
③ 승용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	**매입 면제**	**좌 동**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매입 면제**	**좌 동**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매입 면제**	**좌 동**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5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좌 동
② 2,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5/100	좌 동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좌 동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좌 동
3. 각종 허가		
가. 도로·하천(소하천포함)·구거부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점·사용료부과액의 5/100 (점·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허가 시는 최초 점·사용료 징수 시에만 점·사용료 부과액의 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함)	좌 동
나. 토지형질 변경허가		
① 농지 (전 ·답)	㎡당 1,500원	좌 동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	㎡당 3,000원	좌 동
다. 골프장 등록	㎡당 60원	좌 동
4.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좌 동